

변 경 대 비 표

[신탁계약서]

1. 펀드명 : 하나 UBS 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및 이에 따른 투자신탁명칭 변경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1.11.5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3.08.29 시행)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8. 9. 28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9. 1.15 시행)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사항 반영(2014.06.25 개정)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2 년 07 월 06 일

4. 대비표

구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조(용어의 정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생략) (신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현행과 같음) 8.“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및	① 이 투자신탁은 <u>증권투자신탁</u> 으로서, 투자신탁의	① 이 투자신탁은 <u>부동산투자신탁</u> 으로서, 투자신탁의

및 명칭 등)	이에 따른 투자신탁명칭 변경 오기정정	명칭은 " 하나 UBS 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5. (생략) (신설) ③(생략) (신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 3 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3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명칭은 " 하나 UBS 글로벌리츠부동산 자 투자신탁[재간접 형] "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5. (현행과 같음) 6. 모자형(자투자신탁) ③(현행과 같음)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 UBS 하나 UBS 글로벌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 형] ⑤집합투자업자는 제 3 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제 4 항 각호의 모투자신탁 이외에 다른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3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집 합투자업 자 및 신탁업자 의 업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조의 2(외국통 화표시자 산에 대한 운용업무)	모자형집합투자 기구로 변경에 따른 삭제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 45 조에 의거 투자신탁재산의 외화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삭제)

의 위탁)		<p>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위탁을 인수한다.</p> <p>②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 45 조 제 2 호 다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자산 및 이와 비슷한 자산("외화자산")에 대하여 운용 및 운용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p> <p>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 99 조 제 2 항 제 5 호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을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2. 공개매수의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p>④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제 4 조의 3(해외위 탁집합투 자업자 명칭 및 업무위탁 의 책임)	모자형집합투자 기구로 변경에 따른 삭제	<p>①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그 소재한 국가에서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투자업 또는 법 제 40 조 제 1 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u>Goldman Sachs</u> <u>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u> <u>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u> <u>L.P., Goldman Sachs (Singapore)</u> <u>Pte., Goldman Sachs Asset</u> <u>Management Co., Ltd., Goldman</u> <u>Sachs (Asia) L.L.C., 및 Goldman</u> <u>Sachs Asset Management Australia</u> <u>Pty Ltd.</u>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p>	(삭제)

		<p><u>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u></p> <p><u>②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해외자산운용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투자자문사를 선정, 변경, 해지할 수 있다.</u></p> <p><u>③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보수의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협의한 금액으로 한다.</u></p> <p><u>④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⑤운용업무를 위탁받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u></p>	
제 4 조의 4(해외보관대리인)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에 따른 삭제	<p><u>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u></p> <p><u>1. 제17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u></p> <p><u>2.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u></p> <p><u>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u></p>	(삭제)

		<u>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u>	
제 6 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30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u>수익증권</u> 의 총 좌수는 1 조좌로 한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30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u>수익권 (법 제 189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u> 의 총 좌수는 1 조좌로 한다.
제 9 조(수익권의 분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u>표시한다.</u>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u>발행한다.</u>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u>수익증권 발행가액</u>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u>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u>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 <u>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u> 」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u>전자증권법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u> 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제 14 조(수익자명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u>한국예탁결제원에</u>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u>한국예탁결제원과</u>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u>전자등록기관에</u>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u>전자등록기관과</u>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p>위탁계약을 체결하고, <u>한국예탁결제원</u>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생략)</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u>한국예탁결제원</u>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u>한국예탁결제원</u>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2.(생략)</p> <p>⑥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u>한국예탁결제원</u>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위탁계약을 체결하고, <u>전자등록기관</u>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u>전자등록기관</u>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u>전자등록기관</u>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⑥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u>전자등록기관</u>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제 15 조(자산운용 지시 등)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8. 9. 28 시행)	<p>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u>한도로 하여</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 16 조(투자목적)	모자형집합투자 기구로 변경	<p>이 투자신탁은 <u>외국법령에 의해</u> <u>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u></p>	<p>이 투자신탁은 <u>외국법령에 의해</u> <u>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u></p>

		<p><u>집합투자증권등을</u> <u>법</u> <u>시행령</u>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u>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u> <u>법</u> <u>시행령</u>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7 조(투자대상 자산 등)</p>	<p>모자형집합투자 기구로 변경</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3.08.29 시행)</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u>부동산과 관련된,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 및 12 개월 이내에 상장 예정인 증권에 한한다.</u></p> <p>2. <u>부동산과 관련된,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법 제 4 조제 4 항의 지분증권으로서 주권(해외주식예탁증서 포함),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거래소에</u></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제 3 조제 4 항 각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p> <p>2.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상장되어 있는 증권 및 12 개월 이내에 상장 예정된 증권에 한한다.</p> <p>3. 법 제 4 조 제 3 항의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무증권"이라 한다)</p> <p>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5.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 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제 1 항 제 4 호에 따른 어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p> <p>6.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p>	
--	--	---	--

		<p><u>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등 법 제 9 조 제 14 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통화와 고나련된 장내파생상품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다만 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다만 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헷지 목적의 거래에 한한다.</u></p> <p>7. <u>법 제 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중,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헷지 목적의 거래 및 금리스왑거래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고 한다).</u></p> <p>8. <u>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u></p> <p>9. <u>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u></p> <p>10. <u>증권의 차입</u></p> <p>11. <u>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u></p>	
제 18 조(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	모자형집합투자 기구로 변경	<p>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p>1. <u>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의</u> 투자는 <u>투자신탁 자산총액의</u></p>	<p>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p>1. <u>제 3 조제 4 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u> 투자는 <u>투자신탁</u></p>

		<p>50%이상으로 한다.</p> <p>2.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p> <p>3. 채무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p> <p>4.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p> <p>5.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p> <p>6.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로 한다.</p>	<p>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p> <p>2. 제 17 조제 2 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다.</p>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모자형집합투자 기구로 변경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을 포함한다. 이하 동 항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p>	(삭제)

		<p>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특정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속 기간을 정하여 설립한 회사(이하 "부동산개발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 부동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제 2 조 제 4 호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증권"이라 한다) 가액의 70% 이상인 유동화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부동산투자목적회사와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부동산 또는 법 시행령 제 240 조 제 4 항 제 4 호에 따른 자산을 합한 금액이</p>	
--	--	--	--

		<p>90% 이상인 회사(이하 "부동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p>	
--	--	---	--

		<p>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정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p> <p>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p> <p>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p>	
--	--	---	--

		<p>100%까지 투자하는 행위는 허용된다.</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 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는 허용된다.</p> <p>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동항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p>	
--	--	--	--

		<p>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p> <p>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 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p> <p>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p> <p>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p>	
--	--	--	--

		<p>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p> <p>2.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단, 위 1 호 각목 및 아래 각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p> <p>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위 1 호 가목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함)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3.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4.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 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5.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6. 집합투자기구의</p>	
--	--	---	--

		<p> <u>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u> <u>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u> <u>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u> <u>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u> <u>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u> <u>포함한다)의</u> <u>집합투자증권을</u> <u>판매하는</u> <u>투자매매업자(외국</u> <u>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u> <u>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u> <u>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u> <u>포함한다]</u> 또는 <u>투자중개업자(외국</u> <u>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u> <u>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u> <u>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u> <u>같다)를</u> <u>포함한다]</u>가 받는 <u>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u> <u>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으로</u> <u>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u> <u>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u> </p> <p> <u>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u> <u>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u> <u>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u> <u>아니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u> <u>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u> <u>그러하지 아니하다.</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u> <u>총액의 범위에서 50%를 초과하여</u> <u>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u> <u>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u> <u>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하는</u> <u>행위</u> <u>2.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u> <u>총액의 범위에서 50%를 초과하여</u> <u>증권을 대여하는 행위</u> <u>3.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u> <u>범위에서 20%를 초과하여 증권을</u> 	
--	--	---	--

		<p>차입하는 행위</p> <p>④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법 시행령 제 82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p> <p>법 제 191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p> <p>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또는 법 제 191 조에 따른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때 집합투자업자는 “대량 환매청구” 또는 “대량 매수청구”를 이 투자신탁 자산의 10% 이상(판매회사 조정분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환매 청구</p>	
--	--	---	--

	<p>또는 매수청구로 해석한다. 여기서 “판매회사 조정분”이란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들로부터 받은 매입신청이나 환매신청에 기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처분을 한 이후에 판매회사가 이를 변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초과하거나 부족한 취득이나 처분을 한 상태가 생기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경우 판매회사가 최초매입분을 더 낮게 조정하여 최종매입분이 최초수령분보다 낮아지고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금액보다 낮아지게 되면,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에 사실상 초과취득을 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주문이 최초매입분보다 낮게 조정되어 이 투자신탁이 초과취득을 한 상태가 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초과취득분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초과취득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p> <p>⑥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법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⑦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p>	
--	--	--

		<p>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⑧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 84 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 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85 조에서 정하는 거래 <p>⑨집합투자업자는 제 8 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⑩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법 제 189 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⑪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 86 조 제 1 항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법 제 110 조에 따른 수익증권을</p>	<p>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 84 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 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85 조에서 정하는 거래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 8 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법 제 189 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 86 조 제 1 항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법 제 110 조에 따른 수익증권을</p>
--	--	---	---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법 시행령 제 86 조 제 3 항에 따른 투자대상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법 시행령 제 86 조 제 3 항에 따른 투자대상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모자형집합투자 기구로 변경	<p>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제 6 호, 제 19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삭제)</p>

		<p><u>처분이 불가능하거나</u> <u>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u> <u>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u> <u>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u> <u>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u> <u>적합한 것으로 본다.</u></p> <p>1. <u>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u> <u>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u> 2. <u>투자신탁의 일부해지</u> 3. <u>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u> 4. <u>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u> <u>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u> 5. <u>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u> <u>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u> <u>경우</u></p> <p>③제 19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5 호부터 제 7 호까지와 제 2 항 제 1 호, 제 2 호는 투자신탁의 <u>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u> <u>적용하지 아니한다.</u></p> <p>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 17 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p>	(삭제)
제 25 조 의 3(모투 자신탁 수익증권 의 매수)	모자형집합투자 기구로 변경	(신설)	<p><u>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u> <u>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u> <u>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u> <u>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u> <u>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u> <u>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u></p>

			<u>신청하여야 한다.</u>
제 26 조 의 2 (모투자신 탁 수익증권 의 환매청구)	모자형집합투자 기구로 변경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모자형집합투자 기구로 변경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환매연기)	모자형집합투자 기구로 변경	①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①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 <u>및 이</u> <u>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u> <u>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u> <u>연기된 경우</u> 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모자형집합투자 기구로 변경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u>대차대조표</u>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p>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u>재무상태표</u>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u>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u>)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p>
제 32 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p>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u>대차대조표</u> 2~3. (생략)</p>	<p>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u>재무상태표</u> 2.~3. (현행과 같음)</p>
제 35 조(상환금등의 지급)	모자형집합투자 기구로 변경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p>②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p>	<p>②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u>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u>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p>

	반영(2019. 9.16 시행)	<p>있다.</p> <p>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u>모투자신탁재산인</u>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제 37 조(수익자총회)	모자형집합투자 기구로 변경 오기정정	<p>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u>또는 신탁계약</u>)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p> <p>②~⑧(생략)</p> <p>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 5 항 및 제 6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본다.</p> <p>⑩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 4 항, 제 6 항, 제 8 항 및 제 9 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p> <p>(신설)</p>	<p>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u>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u>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p> <p>②~⑧(현행과 같음)</p> <p>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u>제 6 항 및 제 7 항</u>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본다.</p> <p>⑩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 4 항, 제 6 항, <u>제 7 항 및 제 8 항</u>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p> <p><u>⑪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u></p>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9 조(보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u>대차대조표</u>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2. (생략)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u>재무상태표</u>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 40 조(판매수수료)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사항 반영(2014.06.25 개정)	④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 3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판매회사는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 3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u>저축</u>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 42 조(기타 운용비용 등)	문구 명확화 모자형집합투자 기구로 변경	②제 1 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생략) 2. 증권 등 자산의 <u>예탁</u> 및 결제비용 3.~8. (생략) 9. <u>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u> 10. <u>집합투자증권 판매수수료 비용</u>	②제 1 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증권 등 자산의 <u>예탁비용</u>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전자등록비용) 및 결제비용 3.~8. (현행과 같음) (삭제)

		<p>11. <u> </u>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③집합투자업자는 제 4 조의 2 및 이조 제 2 항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수료율, 지급방법 및 기일 등은 해외보관대리에 관한 당사자(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을 말한다)간 합의에 따라야 한다.</p> <p>④제 1 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p>	<p>(삭제)</p> <p>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삭제)</p> <p>③제 1 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p>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p>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 2 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p>	<p>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8. 9. 28 시행)</p> <p>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p>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4.(생략)</p> <p>5.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④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4.(현행과 같음)</p> <p>5.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 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④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p>	<p>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8. 9. 28 시행)</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p>1.~2.(생략)</p> <p>(신설)</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p>1.~2.(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 83 조</p>

			<u>제 2 항으로 정하는 때</u>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p>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p> <p>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1.11.5 시행)</p> <p>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p> <p>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9. 1.15 시행)</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p> <p>3.~5. (생략)</p> <p>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2.(생략)</p> <p>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u>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u>)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 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u>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u>)</p> <p>3.~5. (현행과 같음)</p> <p>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u>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u>)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p>

		<p>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u>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제 52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사항 반영(2014.06.25 개정)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 <u>통장</u> 거래약관" (C-P 클래스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 <u>수익증권저축약관</u> "(C-P, <u>C-PE 클래스의</u>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	(신설)	<p>부 칙</p> <p><u>1.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22 년 07 월 06 일부터 시행한다.</u></p>

[간이투자설명서]

1. 펀드명 : 하나 UBS 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및 이에 따른 투자신탁명칭 변경
- 공모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의 7 (2022.01.01 시행))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위험 기재사항 보완
- 오기정정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2 년 07 월 06 일

4. 대비표

구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하나 UBS 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하나 UBS 글로벌리츠부동산 자 투자신탁[재간접형]
요약정보- 표지	모자형집합지구로 변경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핵심위험에 대해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핵심위험에 대해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및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등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하 생략) (신설)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현행과 같음) <u>[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추가</u>
요약정보 - 분류	- 오기 정정 및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투자신탁, 증권(주식-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신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요약정보 - 투자비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u>정보 업데이트</u>
요약정보 - 투자실적추이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u>정보 업데이트</u>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u>정보 업데이트</u>
요약정보- 주요투자위험	기재사항 보완	-	<u>(추가)</u> <u>부동산투자회사관련 위험</u> <u>재간접투자위험</u>
요약정보- 과세	공모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과세특례 가입기간: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과세특례 가입기간: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1. 펀드명 : 하나 UBS 글로벌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및 이에 따른 투자신탁명칭 변경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1.11.5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5.7.8 시행)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8. 9. 28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9. 1.15 시행)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0. 4. 1 시행)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 공모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의 7 (2022.01.01 시행))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2 년 07 월 06 일

4. 대비표

구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문서전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펀드명: 하나 UBS 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펀드명: 하나 UBS 글로벌리츠부동산 자 투자신탁[재간접형]
문서전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u>대차대조표</u>	<u>재무상태표</u>
문서전반 (해당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	<u>한국예탁결제원</u>	<u>전자등록기관</u>

문서전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삭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신설)	<p>12. <u>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국법령에 의해 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u></p> <p>13. <u>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을 통해 외국법령에 의해 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외국 상장 부동산 관련 종목에 편입된 부동산 자산의 매매가 어려워 공정가격에 적당한 시간을 갖고 Rebalancing 및 청산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u></p>
제 1 부 모 집 또는 매 출 에 관 한 사 항			
2. 집합투자기 구의 종류 및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마. 특수형태 (생략) (신설)	<p>마. 특수형태 (현행과 같음)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p>

형태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 구의 연혁	정보 업데이트	-	2022 년 07 월 06 일: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및 이에 따른 투자신탁명칭 변경(하나 UBS 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 하나 UBS 글로벌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 형]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공모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5. 가. 운용전문인 력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추가 정보 업데이트	
6. 가. 집합투자기 구의 종류 및 형태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부동산집합투자기구(재간접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재간접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자투자신탁)	
6. 다. 모자형구조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신설)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div> <div> <div>하나 UBS 글로벌 리츠부동산모투자 신탁[재간접형]</div> <div>80% 이상</div> </div> <div> <div>[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 [변경후 1]</div> </div> </div>
7.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목적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p>이 투자신탁은 <u>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등을</u>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하 생략)</p>	<p>이 투자신탁은 <u>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u> <u>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u>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현행과 같음)</p> <p>[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추가 (현행 투자목적과 같음)</p>
8. 가. 투자대상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p><u>외국집합투자증권등: 50% 이상</u> <u>지분증권: 30% 이하 투자 등</u> (이하 생략)</p>	<p>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u>하나 UBS 하나 UBS</u> <u>글로벌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u> <u>형]: 80% 이상 투자</u> <u>유동성자산 : 20% 이하 투자 등</u></p> <p>[2]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추가 (현행 투자대상자산과 같음)</p>
8. 나. 투자제한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p><u>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수</u> <u>동일종목투자제한</u> <u>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제한</u> <u>파생상품 투자제한</u> <u>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제한 등</u></p>	<p>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u>이해관계인 투자제한</u></p> <p>[2]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추가 (현행 투자제한과 같으며, 일부 항목 법령개정사항 및 신탁계약서 조항 반영)</p>
8.다. 기타 제한사항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p>(1) 자기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2) 금전차입 등의 제한</p>	<p>(해당 내용은 제 2 부. 8. 나. 투자제한 중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에 포함하여</p>

			<u>기재하였으므로 본항 삭제)</u>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p>가. 투자전략</p> <p>1) 주요 투자전략 및 구조</p> <p>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산의 50% 이상을 외국법령에 의해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호주, 미국 및 기타 지역의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업무위탁계약에 의거 아래 회사에서 담당하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1)~(7) (생략)</p> <p>한편, 선도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를 통해 글로벌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유가증권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을 일부 헤지할 예정입니다. 헤지 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이하 생략)</p> <p>2) 비교지수: FTSE EPRA/NAREIT Developed Index (USD-hedged) X 100%</p> <p>나. 위험관리 (기재생략)</p> <p>다. 수익구조</p>	<p>가. 투자전략</p> <p>1) 주요 투자전략 및 구조</p> <p>이 투자신탁은 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 <u>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u>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p> <p><u>하나 UBS 글로벌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에 80% 이상 투자</u></p> <p>2) 비교지수: FTSE EPRA/NAREIT Developed Index (USD-hedged) X 100%</p> <p>본 투자신탁은 <u>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u> 성과비교를 위하여 FTSE EPRA/NAREIT Developed Index (USD-hedged)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p> <p>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u>나. 위험관리</u></p>

		(기재생략)	<p><u>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자산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에 준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u></p> <p><u>이 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u></p> <p><u>다. 수익구조</u></p> <p><u>이 투자신탁은 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 및 자산배분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u></p> <p><u>[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등] 추가</u></p> <p>가. 투자전략</p> <p>1) 주요 투자전략 및 구조 (현행 투자전략과 같음)</p> <p>2) 비교지수(Benchmark) (현행 비교지수와 같음)</p> <p><u>(신설)</u></p> <p><u>3)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u></p> <p><u>[변경후 2]</u></p> <p>나. 위험관리</p> <p>1) 위험관리 방안 (현행 위험관리와 같음)</p>
--	--	--------	--

			<p><u>(추가)</u></p> <p>※ 환혜지 비용 : 이 투자신탁은 환혜지를 수행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환혜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은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어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는 비용이 정형화되어있지 않고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비용을 별도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혜지 비용을 기재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의 환혜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혜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p> <p><u>(신설)</u></p> <p>2) <u>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방안</u></p> <p><u>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를 위해 위탁운용사인 GSAM(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으로부터</u></p> <p><u>운용보고서를 정기적(월간)으로 수령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위험 관리를 실행합니다.</u></p> <p>- <u>전월 시장 동향</u></p> <p>- <u>월간 펀드 성과: 절대 성과,</u></p>
--	--	--	---

			<p><u>상대 성과, 성과 변동 원인</u></p> <p>- <u>포트폴리오 성과분석</u></p> <p>- <u>시장 전망</u></p> <p>- <u>전월 말 포트폴리오</u></p> <p><u>국가별/섹터별 비교지수대비</u></p> <p><u>구성내역</u></p> <p>- <u>전월 말 포트폴리오 종목별</u></p> <p><u>비교지수 대비 구성내역</u></p> <p>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추가적인 운용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운용사에 요청하여 펀드의 성과 하락 원인과 향후 대책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에 대한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신설)</p> <p>3) <u>유동성 리스크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u></p> <p>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의 유동성 부족, 거래정지, 환매중지 등의 다양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유동성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투자대상의 규모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투자대상의 특성에 맞게 유동성 위험과 관련한 내부 관리</p>
--	--	--	--

			<p><u>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활동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거나 심각히 예견될 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구축하고 있으며, 위기발생 시 단계별 체계적인 위기관리 대응체계에 따라 위기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동성 확보방안, 판매사 대응방안 등 위기관리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사후 마련될 예정입니다.</u></p> <p>다. 수익구조 (현행과 같음)</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p>	<p>※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가. 일반위험 (생략)</p> <p>나. 특수위험 (생략) (신설)</p> <p>다. 기타위험 (생략)</p>	<p>※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u>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u>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가. 일반위험 (현행과 같음)</p> <p>나. 특수위험 (현행과 같음)</p> <p><u>주요 투자대상 국가위험</u> <u>재간접투자위험</u> <u>외국펀드 설립지 국가 위험</u> <u>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u> <u>외국 운용사 관련 위험</u></p>

			다. 기타위험 (현행과 같음)
10. 라. 이 집합투자기 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최직근 결산일 기준 3 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22.21%	최직근 결산일 기준 3 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u>23.00%</u>
11. 가.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신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11.나.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신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나.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 <u>및 이</u>

		<p>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p>	<p><u>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u>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p>
12. 가.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신설)	<p><u>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u> <u>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투자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u></p>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0. 4. 1 시행)	<p>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p> <p>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p>	<p>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u>전날의</u>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p> <p>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u>전날의</u> 최종시가</p>

		(이외 자산의 평가방법은 생략)	(이외 자산의 평가방법은 현행과 같음)
13. 나. 집합투자기 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문구명확화 및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생략) 1.(생략)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8.(생략) 9. <u>해외보관대리인 비용</u> 10. <u>집합투자증권 판매수수료 비용</u> 11.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u>정보 업데이트</u> (주식 업데이트) <u>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금액 및 내역 추가</u> ※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증권 등 자산의 <u>예탁비용(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전자등록비용)</u> 및 결제비용 3.~8.(현행과 같음) (삭제)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4. 가. 이익배분	문구명확화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u>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u>)을 <u>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u>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나. 7)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공모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의 7 (2022.01.01 시행))	가입기간: 2020 년 1 월 1 일부터 <u>2021</u> 년 12 월 31 일까지 (이하 생략)	가입기간: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이하 현행과 같음)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 전기준)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u>정보 업데이트</u>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라. 운용자산규모	정보 업데이트	-	<u>정보 업데이트</u>

3. 가. 3) 의무와 책임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생략) (신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현행과 같음) 7.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	----------------------------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가. 투자자총회 등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1)투자자총회의 구성 (생략)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u>신탁계약에서 정한</u>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생략)	1)투자자총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u>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u> <u>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u> <u>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u>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현행과 같음)
1.나. 잔여재산분 배	모자형집합투 자기구로 변경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u>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u> <u>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u> <u>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u> <u>얻은 경우에</u> 모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가. 의무해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8. 9.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28 시행)	합니다. (생략)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현행과 같음)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u>법 제 6 조 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u>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3.가.2)자산 운용보고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9.01.15 시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9.16 시행) 기재사항 보완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u>직접</u> 또는 <u>전자우편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생략) (신설)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u>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u>)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u>직접,</u> <u>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u> <u>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현행과 같음) <u>· 그 밖에 법시행령</u> <u>제 92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u>
3.가.3)	모자형집합투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자기구로 변경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u>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u>)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나.1)신탁 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기재사항 보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5.7. 8 시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3)(생략) (4)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집합투자업자의 변경(신설) (7)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3)(현행과 같음) (4)투자신탁종류의 변경(<u>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u>) (5)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u>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u>) (7)집합투자업자의 변경(<u>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u>) (8)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9)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3.나.2)수시 공시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1.11.5 시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10.21 시행)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ubs- hana.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및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11)(생략)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u>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u>)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ubs-hana.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및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u>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u>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u>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u>) (3)~(11)(현행과 같음)
3.나.(4)위험 지표의 공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신설)	<u>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u>

[변경후 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하나 UBS 글로벌리츠부동산모투 자신탁[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 등에 5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등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산의 50% 이상을 외국법령에 의해 상장된

		<p>부동산 관련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호주, 미국 및 기타 지역의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합니다.</p> <p>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기초 여건 및 개별 산업에 대한 심층분석 토대로 우량 종목에 투자</p> <p>투자프로세스:</p> <p>지역별 자산배분 → 종목 선택 → 포트폴리오 구성 → 포트폴리오 관리</p> <p>지역별 자산배분: 정성적 분석 및 정량적 분석을 기초로 지역별 배분의 토대가 되는 포괄적인 총 수익 순위를 만들어 냄, 이익 배당과 성장이 주요 변수이지만 수익률 차이, 거시적 지표들 및 지역별 부동산 시장 원리와 지역별 요인들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주요 특징</p> <p>종목선택 및 포트폴리오 구성: 지역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종목을 구성, 시장과의 상관관계 및 시장의 성숙도에 따른 종목 선정 및 종목 구성, 지역별 시장 성숙도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p> <p>포트폴리오 관리: 당사의 운용팀 및 리스크 팀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모니터링 실시, 리스크 점검(지역별 비중 / 종목 비중 / 현금 보유 비율 / 비교지수 보유 비중 / 비교지수 수익률 오차 등)</p> <p>한편, 선도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를 통해 글로벌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유가증권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을 일부 헤지할 예정입니다. 헤지 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p>
	위험관리	<p>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펀드의 위험을 관리합니다.</p>

[변경후 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주요 투자전략

전세계 1,300 여개 부동산 회사 및 리츠와의 미팅을 거쳐 약 400 여개의 투자 가능 부동산 종목을 투자 유니버스로 구성합니다. 기본적 분석(Bottom-up)으로 기업의 내재가치를 분석하며,

중장기적(3~5 년)으로 현금 흐름을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합니다. 지역별 중립적 배분을 기본으로 하되 종목/섹터의 비중 조절합니다.

- 종목별 투자비중 : 종목당 BM대비 $\pm 10\%$ 수준
- 섹터별 투자비중 : 섹터별 BM대비 $\pm 10\%$ 수준
- 최종적으로 투자확신을 지닌 종목 60 ~ 90 여 개 투자

피투자집합투자기구(리츠 및 부동산회사 포함)는 기술혁신 및 인구 구조변화와 관련된 종목에 집중 투자하며, 기술혁신 수혜 분야에는 디지털 스토리지, 통신타워, 라이스 사이언스 오피스, 산업/물류, 테크오피스에 주로 투자합니다. 인구 구조변화와 관련된 섹터로는 헬스케어, 호텔/게임, 제조주택, 공동주택, 싱글패밀리, 셀프 스토리지 분야에 주로 투자합니다.

(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정보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글로벌 리츠 및 부동산 투자회사에 주로 투자하며, 보유상위 종목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포트폴리오 예시는 향후 거시 경제, 시장환경 변화 및 투자판단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됩니다.

(2022 년 5 월말 기준)

종목명	자산 구분	섹터	시가총액 (m, USD)	운용사	투자비중 (%)	Blookberg Ticker	거래 통화	홈페이지 주소	설정지 국가	감독/등록 기관
Public Storage	리츠	셀프스토리지	55,065	Public Storage	4.3	PSA US Equity	USD	www.publicstorage.com	미국	미국 SEC
Prologis, Inc.	리츠	산업	88,925	Prologis, Inc.	4.0	PLD US Equity	USD	www.prologis.com	미국	미국 SEC
Equinix, Inc.	리츠	테크놀러지	62,402	Equinix, Inc.	3.9	EQIX US Equity	USD	www.equinix.com	미국	미국 SEC
Vonovia SE	리츠	주거	24,839	Vonovia SE	2.9	VNA GR Equity	GBP	www.vonovia.de	독일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
AvalonBay Communities, Inc.	리츠	주거	27,792	AvalonBay Communities, Inc.	2.6	AVB US Equity	USD	www.avaloncommunities.com	미국	미국 SEC
Digital Realty Trust, Inc.	리츠	테크놀러지	39,885	Digital Realty	2.4	DLR US Equity	USD	www.digitalrealty.com	미국	미국 SEC

				Trust, Inc.						
Equity Residential	리츠	주거	27,530	Equity Residential	2.4	EQR US Equity	USD	www.equityapartments.com	미국	미국 SEC
Invitation Homes, Inc.	리츠	주거	21,691	Invitation Homes, Inc.	2.4	INVH US Equity	USD	www.invitationhomes.com	미국	미국 SEC
Alexandria Real Estate Equities, Inc.	리츠	오피스	23,774	Alexandria Real Estate Equities, Inc.	2.3	ARE US Equity	USD	www.are.com	미국	미국 SEC
Duke Realty Corporation	리츠	산업	21,615	Duke Realty Corporation	2.1	DRE US Equity	USD	www.dukerealty.com	미국	미국 SEC